

충청북도의 용소방대 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 안 호	386
-------------	-----

제출년월일 : '94.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92년 소방임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 운영이 기초자치 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소관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의 임용권과 예산부담을 도에서 함으로서,
- 의소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군수의 예산지원 중단, 관심소홀 등으로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제반상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 의소대 운영체제를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개편하고, 이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제도를 개선·보완

2. 주요골자

- 의소대 설치권자 조정 (제2조)
 - 소방서 관할 시·군지역은 소방서장이,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은 군수가 설치 → 시지역은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소방서장이, 군지역은 군수가 설치
- 설치권자 조정에 따른 의소대명칭 조정 (제3조)
 -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 군지역 → ○○군 ○○읍·면 의용소방대

- 의소대원 선발시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배치 조항 신설 (제9조)
 - 의소대원 선발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군지역의 대장 임용권자 조정 (제10조)
 - 도지사 → 군수
- 대장의 신분증명권자 조정 (제15조)
 - 대장 임용권자 조정에 따라 현행 도지사 → 군수로 변경
- 복제 지급시기 결정 (제18조)
 - 기존 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즉시 지급토록 명문화
- 군지역 의소대운영 기본경비 예산 편성권자 조정 (제22조)
 - 의소대장 임용권자 조정에 따라 도예산에서 군예산으로 편성토록 조정
 - * 소방법상 의소대경비는 임용권자가 부담토록 개정됨 (소방법 제90조)
- 출동수당 상향 조정 (제23조)
 - 지방소방서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 지급 (8,341원)
 - 지방소방서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지급 (11,961원)
- 부녀의소대 설치구역 조정 (제2조)
 - 현행 시·읍·면단위 설치 → 면지역의 인력부족으로 시·읍지역만 설치토록 하고, 면지역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제안근거

- 내무부 시·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준칙(안)

4. 관계법령 발췌 “별첨”

충청북도의 용소방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 용소방대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① 의소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역별로 설치한다.

1. 군지역 : 읍·면별로 군수가 설치
2. 시지역 :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소방서장이 설치
- ② 소방서와 읍에는 부녀의 용소방대(이하 "부녀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단, 면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③ 의소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 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① 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소방서 의 용소방대라 하며, 군지역에 있어서는 ○○군 ○○읍·면 의용소방대라 한다.

제9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리·통)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원의 임용) ① 대장, 부대장 및 부녀대장과 지역대장은 시지역의 경우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하며, 군지역의 경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용한다. 이 경우 부대장, 지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한다.

제15조 제1항중 "도지사는 대장의,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대원의"를 "임용권자는 대장 또는 대원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지사와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을 "임용권자는"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빼지 제7-1호 서식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빼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중 "도예산으로"를 "임용권자가"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복체는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상황을 넌 2회이상, 소방서장·군수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중 "도예산에"를 "임용권자 소속기관에"로 한다.

제23조 제2항중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로"를 "30으로 나눈 금액(단, 백원미만은 절사한다)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지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3조(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